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8호
----------	-------

발의년월일 : 1998. 4.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외3인

개정사유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 '98. 2. 24.)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종전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고치는등 용어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도록 표기하였음. (안 제5조, 제7조 및 별표1)
-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음. (별표2 중 비교1)

개정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 '98. 2. 24.)

조 례 안 : 덧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

<별표 1>중 “숙박료(1야당)”를 “숙박비(1야당)”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1중 “국외여비규정<별표 2>”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